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2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성일종·박덕흠·인요한

최수진 • 고동진 • 김소희

이종욱 · 장동혁 · 윤상현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평가"를 "평가·해산"으로 한다.

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는 기본재산의 설치 및 유

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반환 대상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은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산된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 반환 후 남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 -----<u>평가·해산</u>----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 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 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 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

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u><신 설></u>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
<u>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u>
어린이집과 「인구감소지역 지
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
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
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3(어린이집의 설치・운
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
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
분에 관한 특례) ① 어린이집

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

- ·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에도 불구하고 해산인가신청서 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 분계획서에는 기본재산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이 경우 반환 대상 보조금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 분계획은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보

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해산된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 반환 후 남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